2017년 고속도로 공사장 교통관리기준 (하)

교통관리 예시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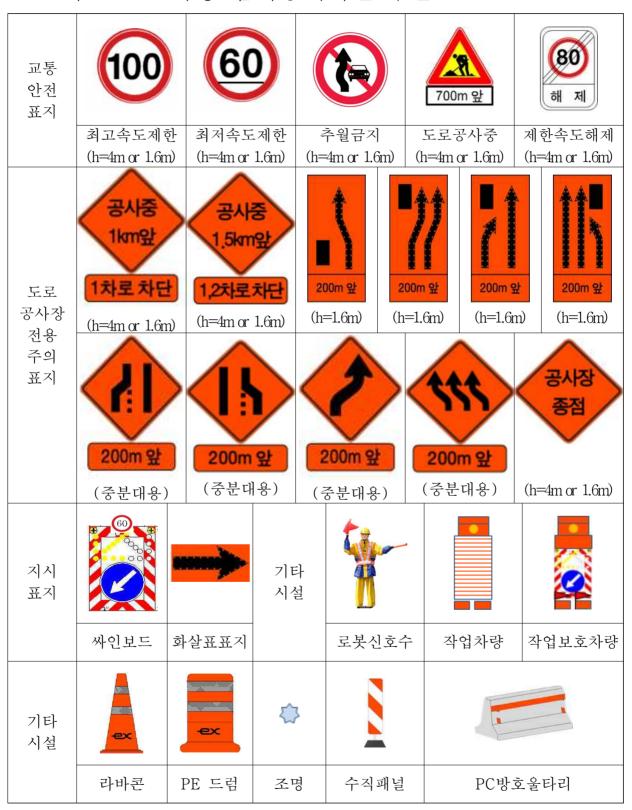
연 한국도로공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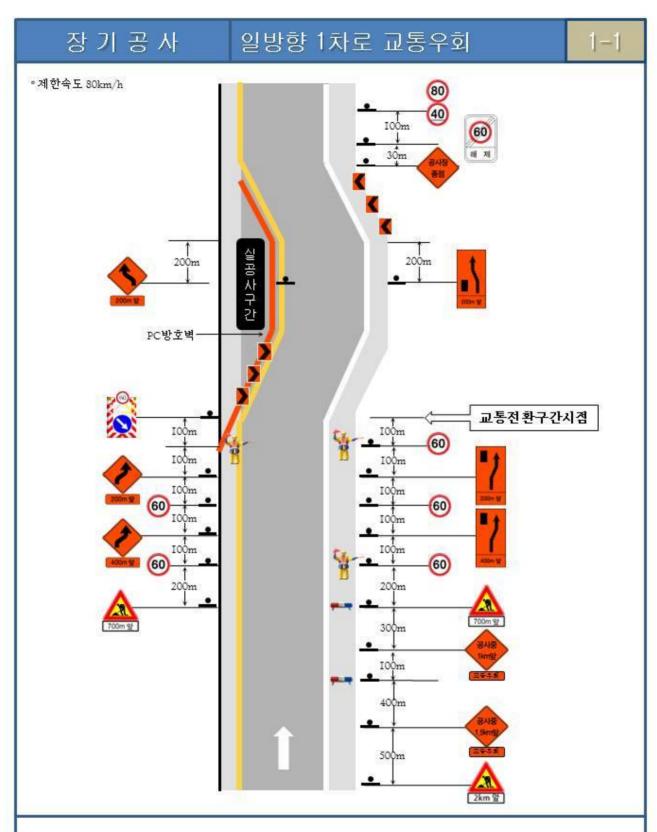
교통관리도 예시도

- o 교통차단 위치, 공사기간별로 교통관리 구간을 구분하여 교통관리도를 작성 하여야 하며, 본 기준에서는 각 조건별로 교통관리 예시도를 제시하였다. 교통관리 예시도는 안전한 도로 공사구간 관리를 위해 교통안전표지, 임시 교통통제시설 등에 대한 설치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.
- o 본 기준은 고속도로 공사장의 교통처리 및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일반적 기준을 제시한 것이므로, 공사로 인한 혼잡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공사장 관리를 위해 도로조건, 현장여건 등을 감안한 별도의 교통관리 계획서를 작성, 이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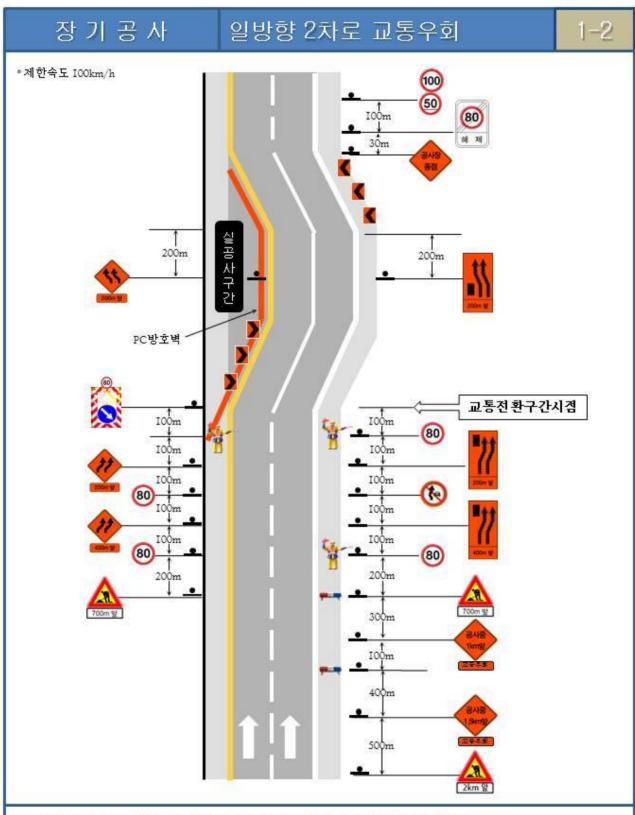
구 분	내 용	비고
장기공사	1-1. 일방향 1차로 교통우회	
	1-2. 일방향 2차로 교통우회	
	1-3. 일방향 3차로 교통우회	
	1-4. 차로부분 차단 교통우회(갓길 활용)	
	1-5. 작업차량 임시 진출입로	
	1-6. 가로등 및 안전시설 설치 상세도	
단기공사	2-1. 일방향 2차로 중 1차로 차단	
	2-2. 일방향 2차로 중 2차로 차단	
	2-3. 일방향 3차로 중 1차로 차단	
	2-4. 일방향 3차로 중 1,2차로 차단	
	2-5. 일방향 3차로 중 2,3차로 차단	
	2-6. 일방향 3차로 중 3차로 차단	
	2-7. 일방향 4차로 중 1차로 차단	
	2-8. 일방향 4차로 중 1,2차로 차단	
	2-9. 일방향 4차로 중 3,4차로 차단	
	2-10. 일방향 4차로 중 4차로 차단	
	2-11. 중앙분리대 측 시설 정비 차단	
	2-12. 터널내 차단 2-13. 전면 차단	
	2-14. 영업소 광장부 내 차단 2-15. 램프 차단(갓길 포함)	
	2-15. 점프 사인(첫절 도함) 2-16. 안전시설 설치 및 철거	
	2-10. 현선기를 들지 못 즐기 2-17. 안전시설 설치 상세도	
기타공사	3-1. 갓길 차단(단이이상)	
	3-2. 단시간 공사(성토부 등 노선밖 작업)	
	3-3. 단시간 공사(본선, 갓길)	
	3-4. 단시간 공사(터널 내)	
	3-5. 이동작업(오물수거)	
	3-6. 이동작업(노면청소)	
	3-7. 이동작업(차선도색 등)	
	3-8. 이동작업(터널 내)	
		I.

※ 고속도로 공사장 임시통제시설 구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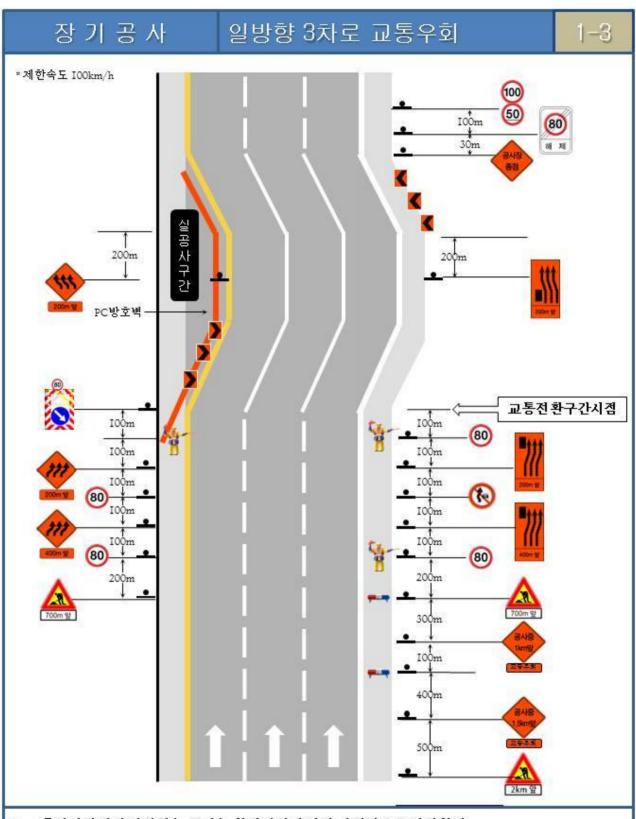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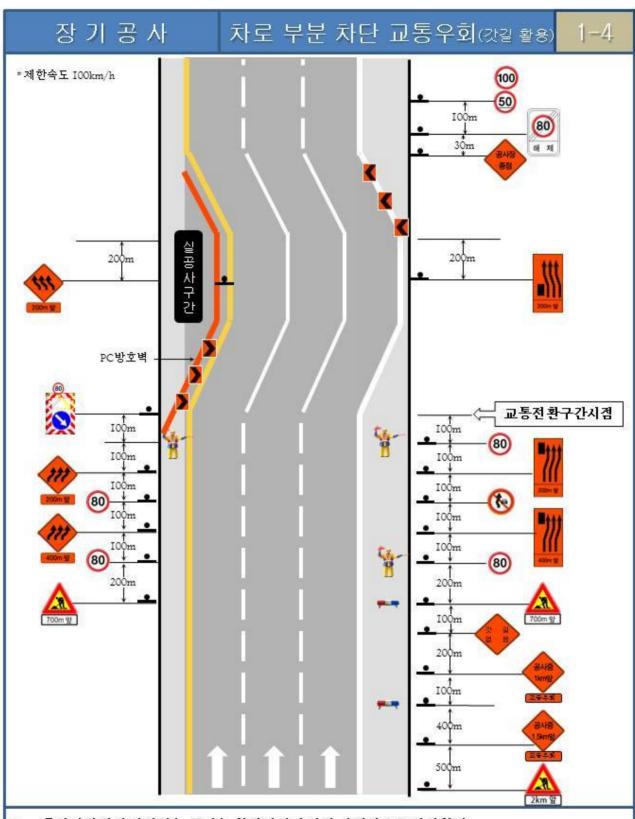
- 중앙분리대에 설치되는 표지는 현장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설치한다.
- 갈매기표지설치 간격은 45m로설치한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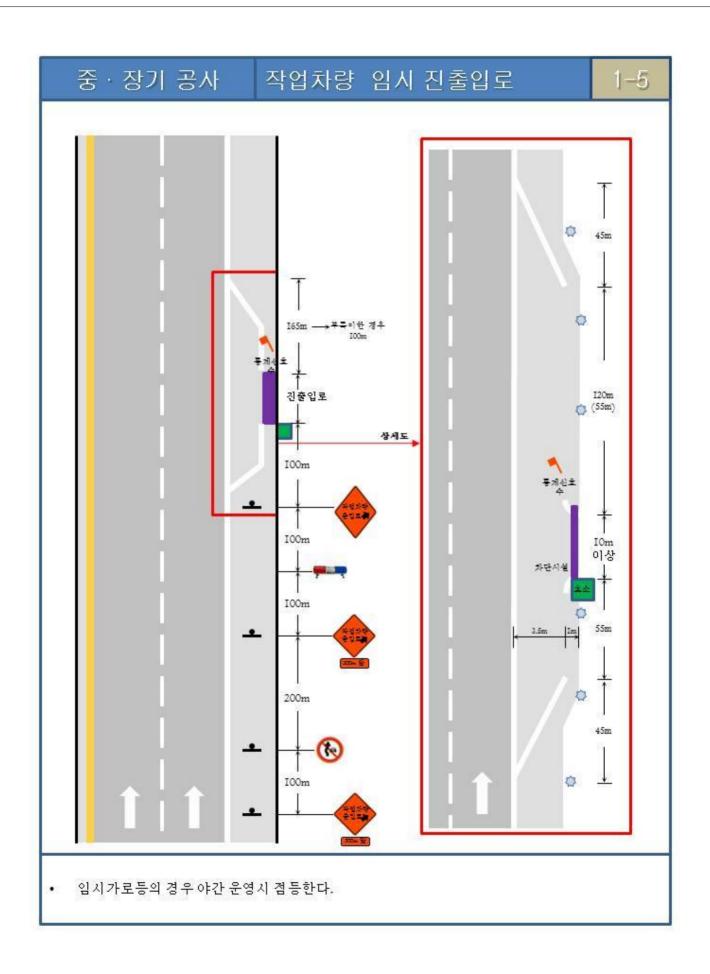
- 중앙분리대에 설치되는 표지는 현장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설치한다.
- 갈매기표지 설치 간격은 45m로 설치한다.
- 추월금지 표지(해제표지 포함)는 관할 경찰관서와 협의하여 필요구간에 설치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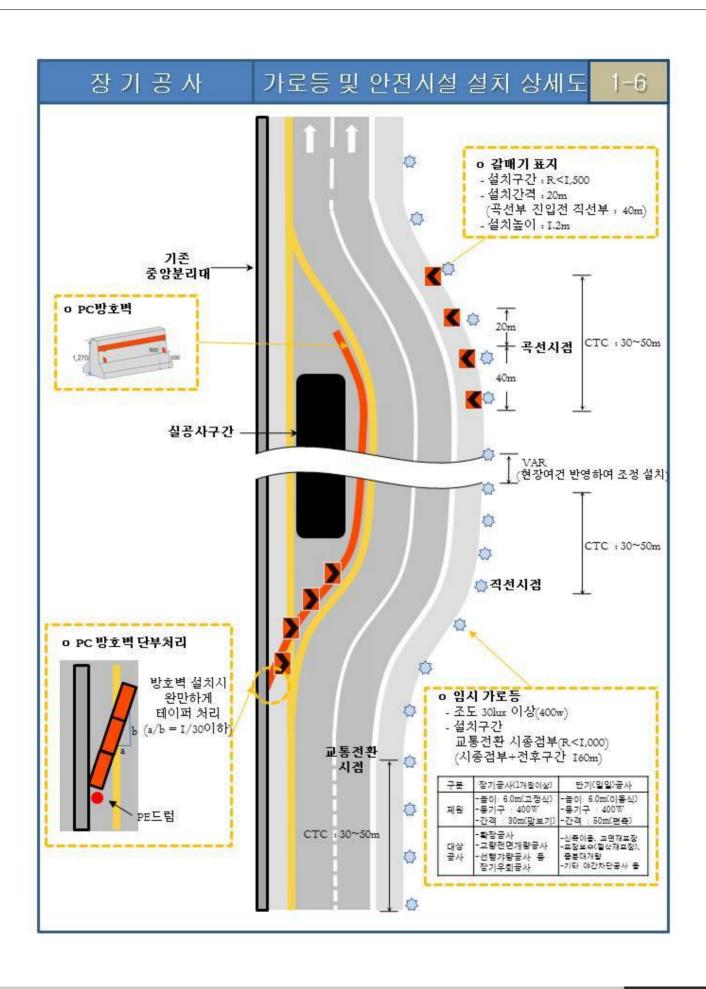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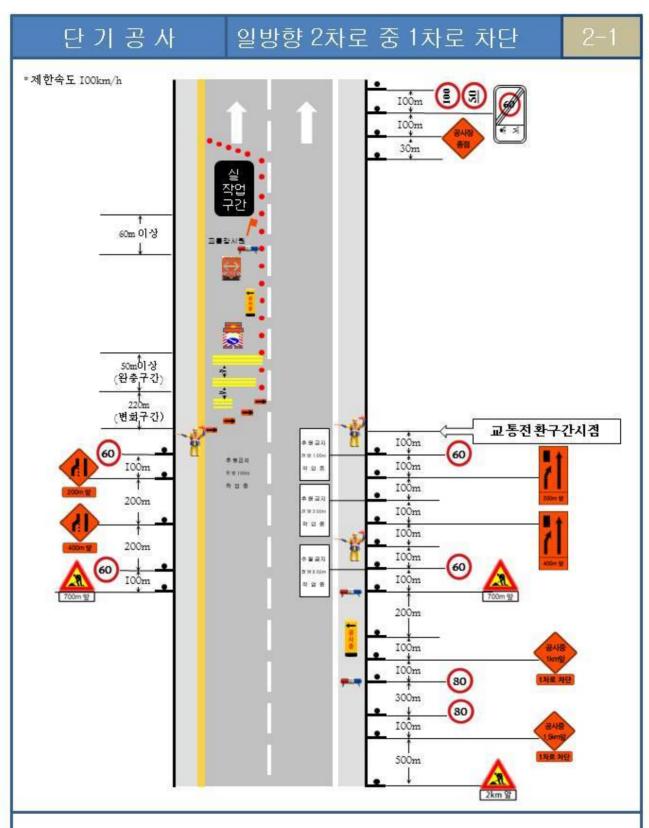
- 중앙분리대에 설치되는 표지는 현장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설치한다.
- 갈매기표지 설치 간격은 45m로 설치한다.
- 추월금지 표지(해제표지 포함)는 관할 경찰관서와 협의하여 필요구간에 설치한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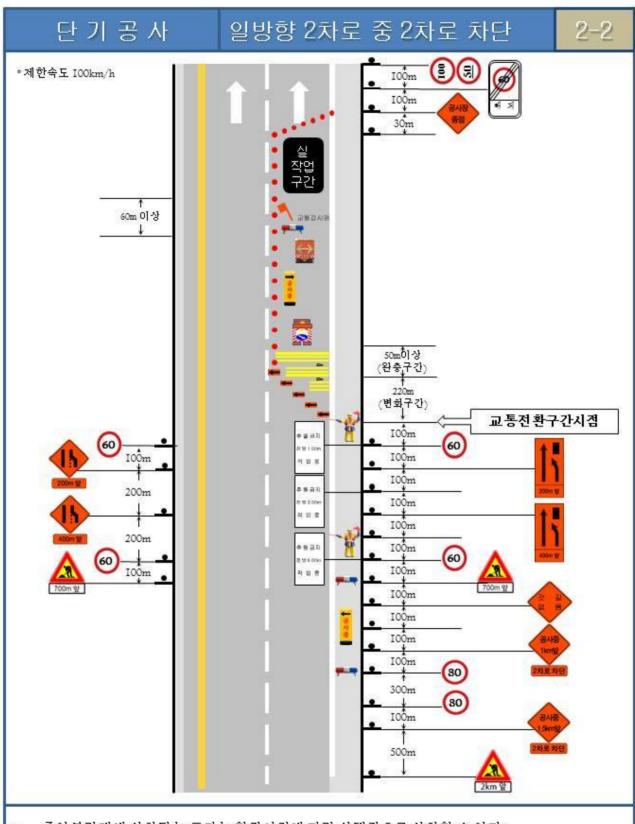
- 중앙분리대에 설치되는 표지는 현장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설치한다. 갈매기표지 설치 간격은 45 m로 설치한다.
- 추월금지 표지(해제표지 포함)는 관할 경찰관서와 협의하여 필요구간에 설치한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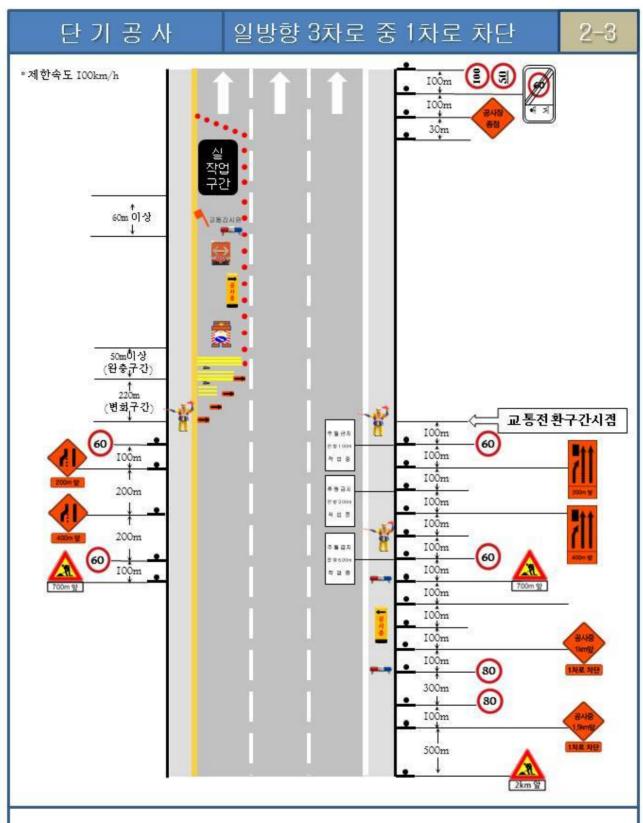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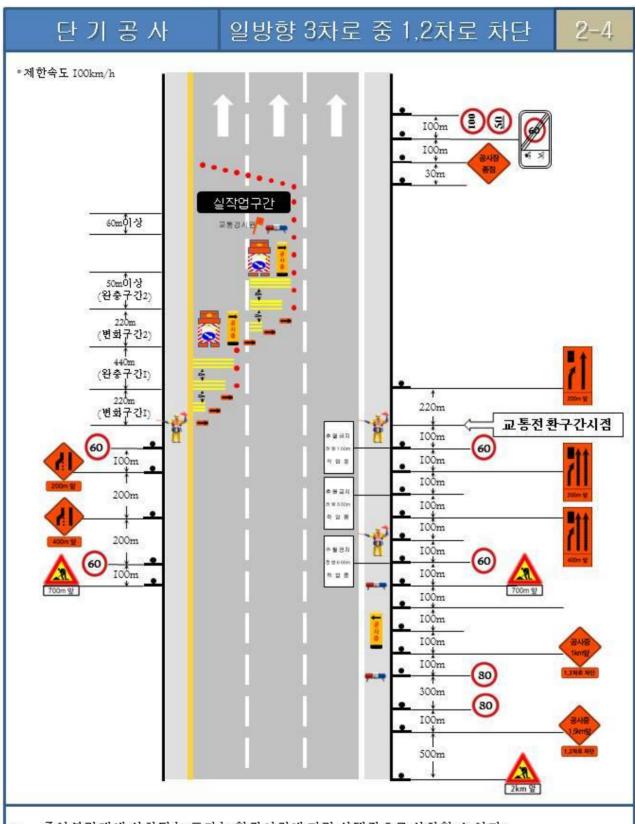
- 중앙분리대에 설치되는 표지는 현장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.
- 최후방 작업보호자동차에 지향성 스피커를 설치해야 한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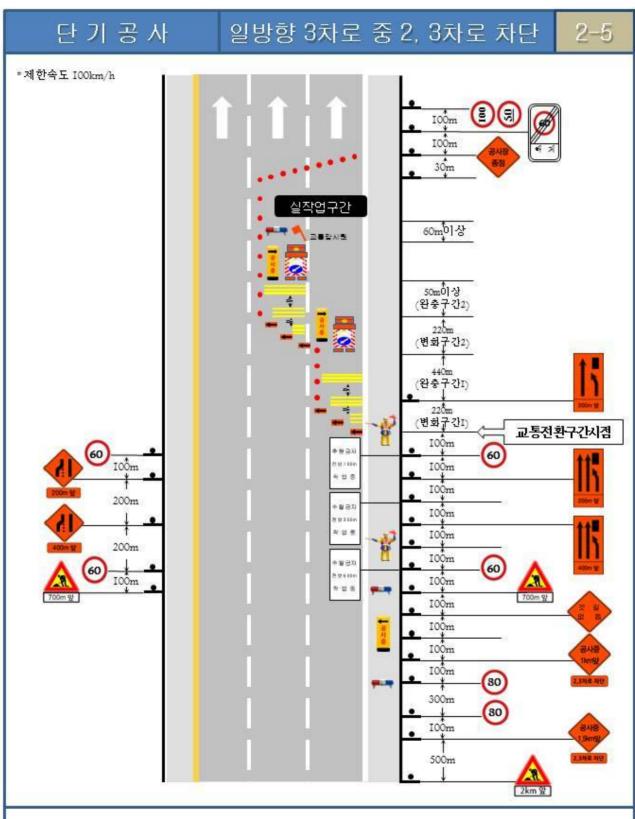
- 중앙분리대에 설치되는 표지는 현장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.
- 최후미 작업보호자동차에 지향성 스피커를 설치해야 한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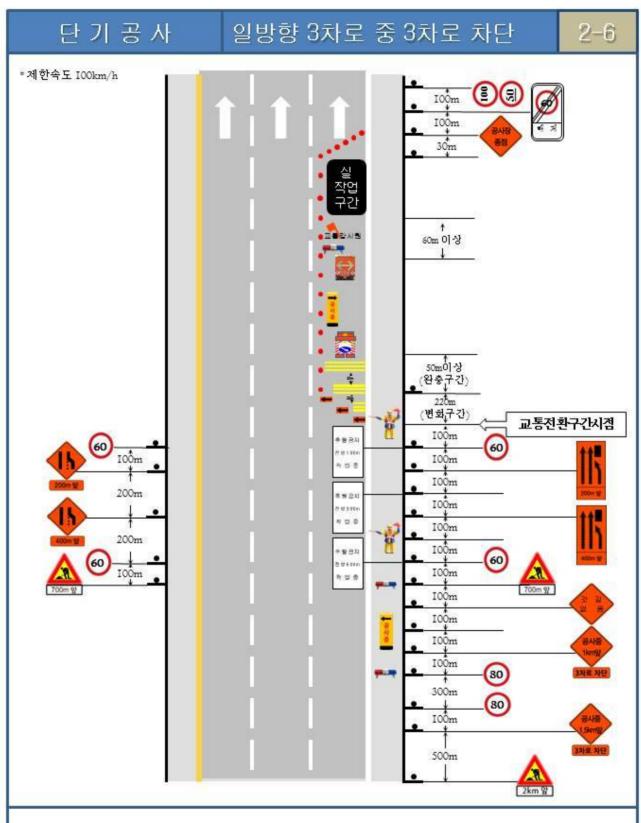
- 중앙분리대에 설치되는 표지는 현장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.
- 최후방 작업보호자동차에 지향성 스피커를 설치해야 한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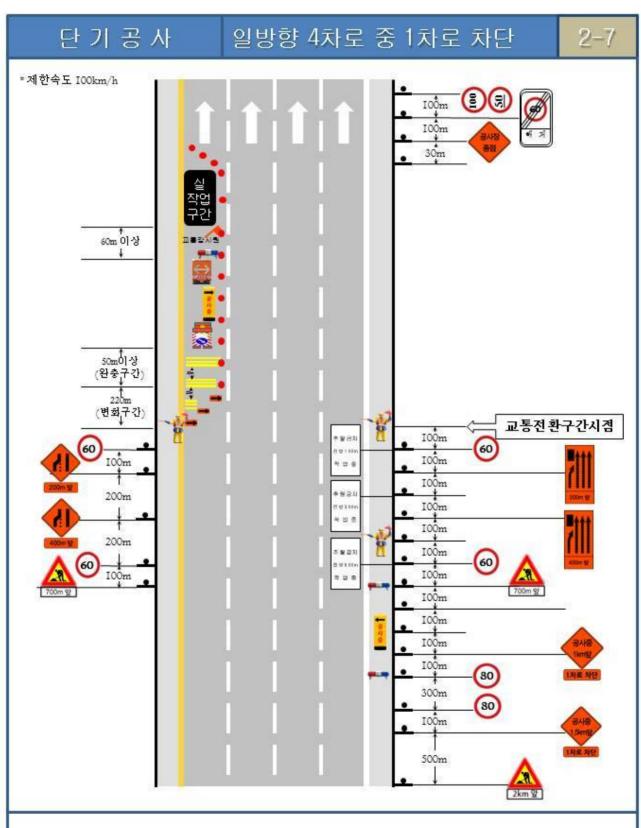
- 중앙분리대에 설치되는 표지는 현장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.
- 최후미 작업보호자동차에 지향성 스피커를 설치해야 한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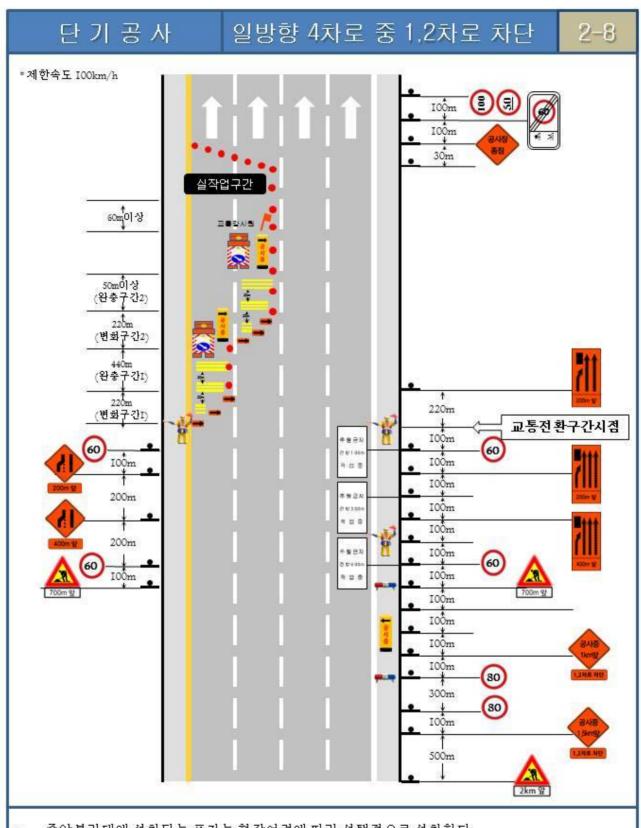
- 중앙분리대에 설치되는 표지는 현장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.
- 최후미 작업보호자동차에 지향성 스피커를 설치해야 한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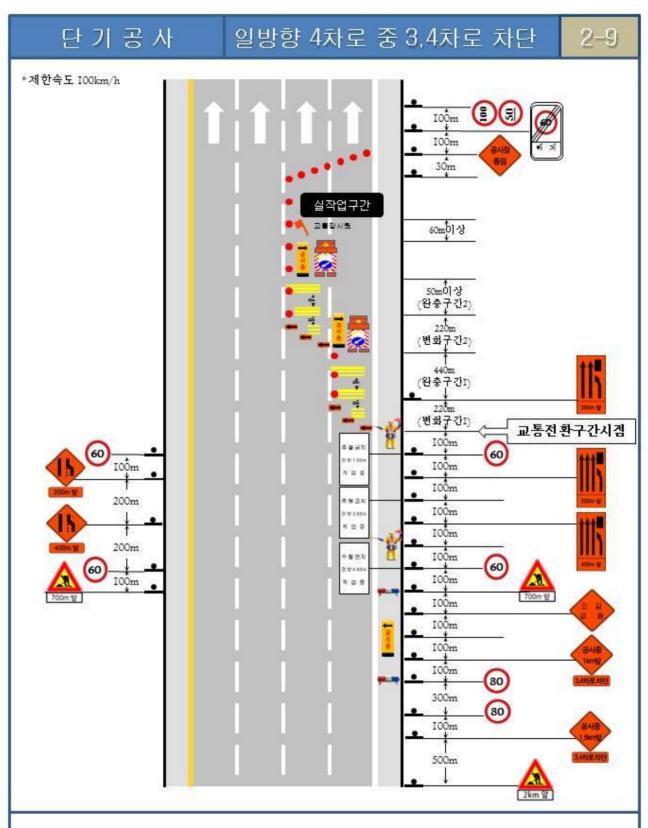
- 중앙분리대에 설치되는 표지는 현장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.
- 최후미 작업보호자동차에 지향성 스피커를 설치해야 한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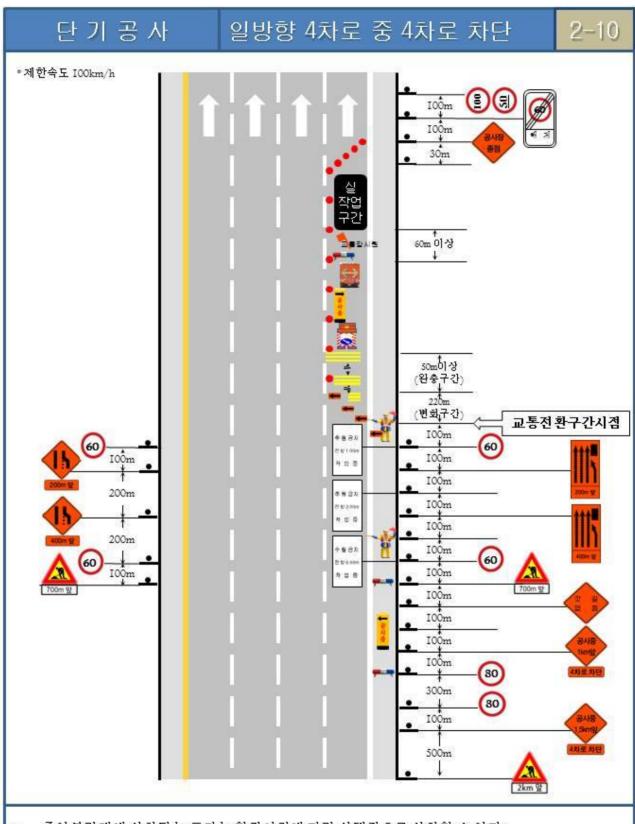
- 중앙분리대에 설치되는 표지는 현장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설치한다.
- 최후미 작업보호자동차에 지향성 스피커를 설치해야 한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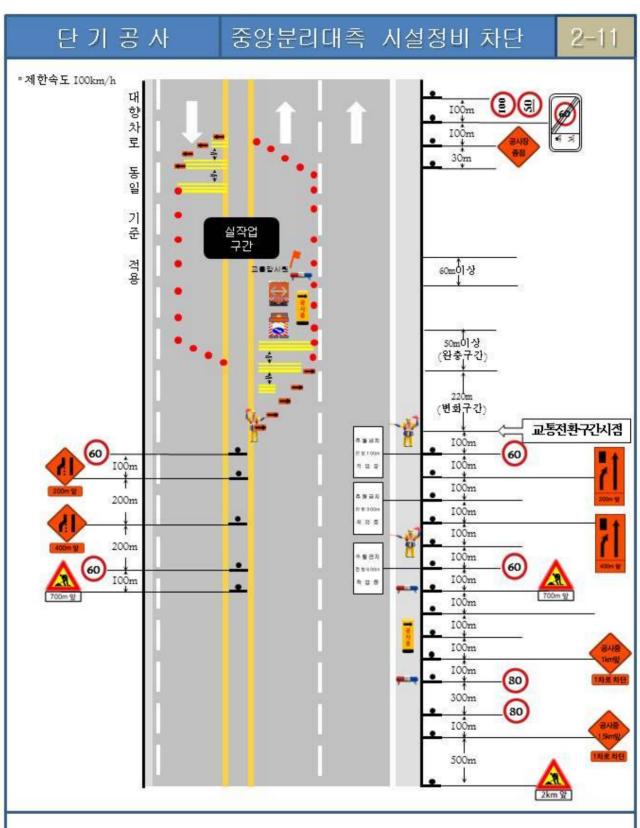
- 중앙분리대에 설치되는 표지는 현장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설치한다.
- 최후미 작업보호자동차에 지향성 스피커를 설치해야 한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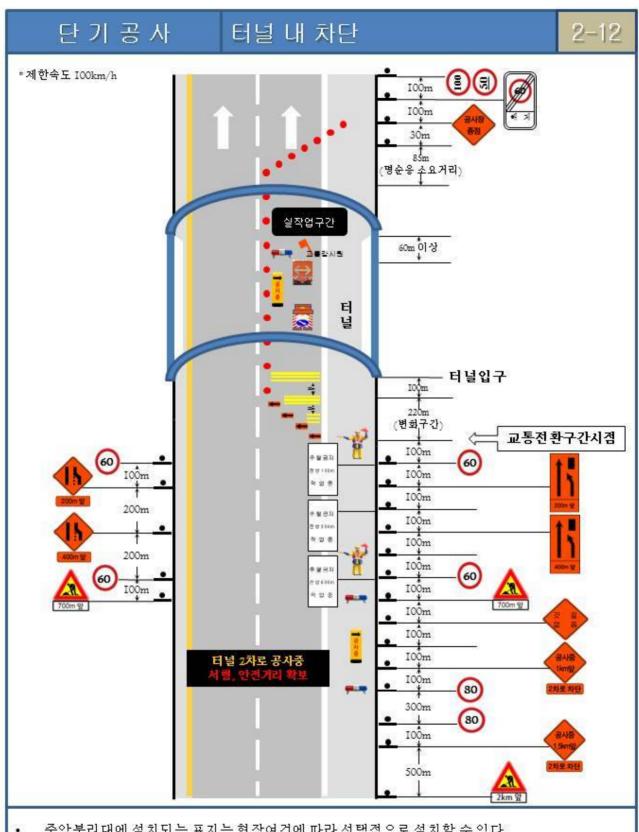
- 중앙분리대에 설치되는 표지는 현장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.
- 최후미 작업보호자동차에 지향성 스피커를 설치해야 한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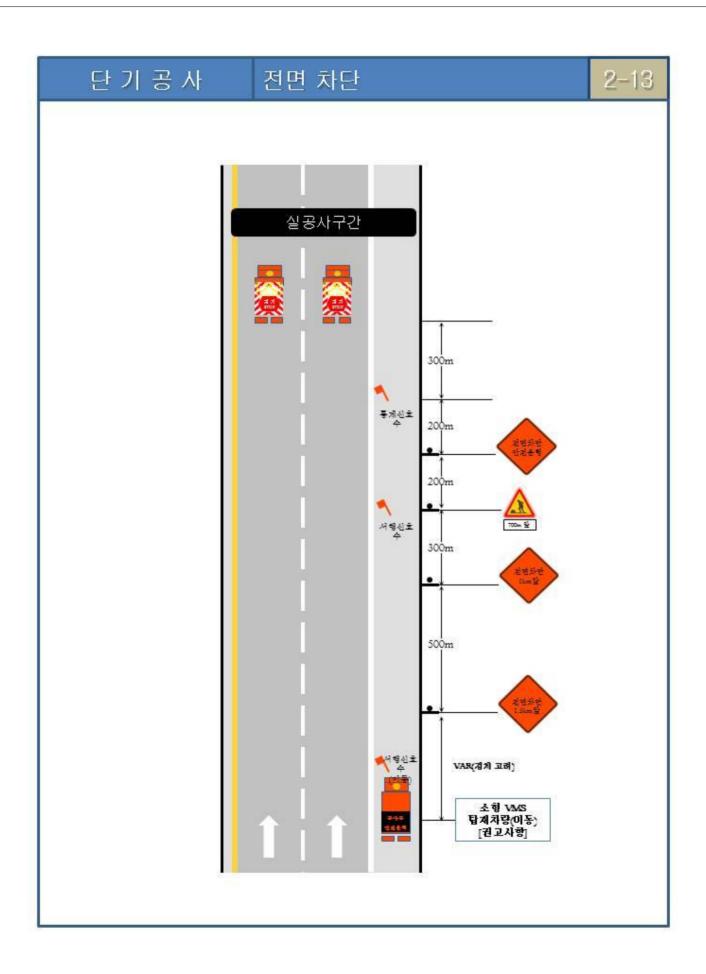
- 중앙분리대에 설치되는 표지는 현장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.
- 최후미 작업보호자동차에 지향성 스피커를 설치해야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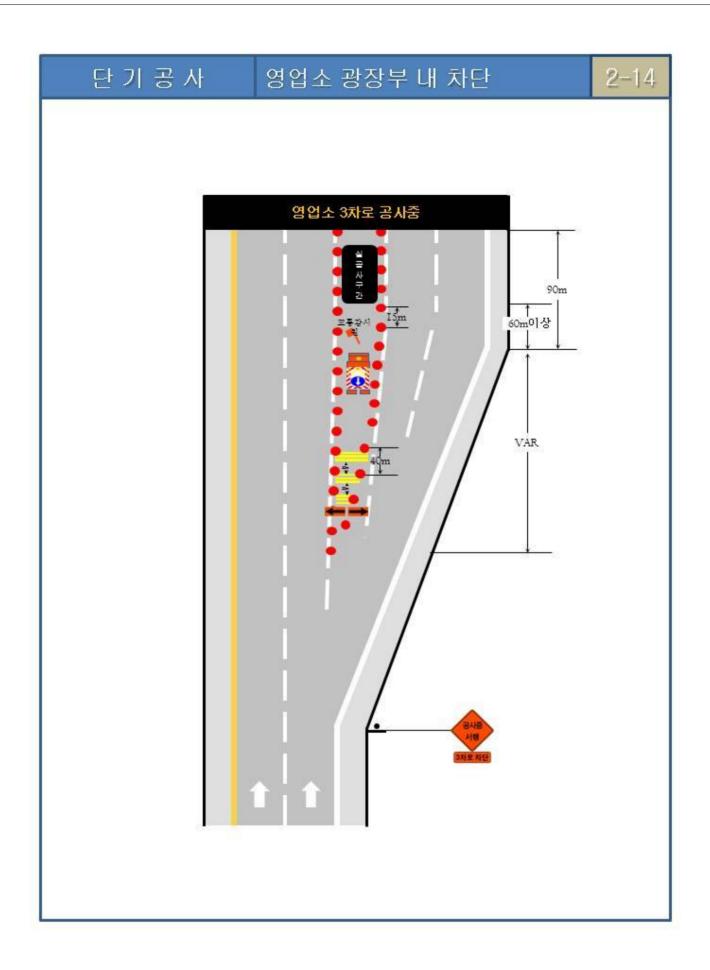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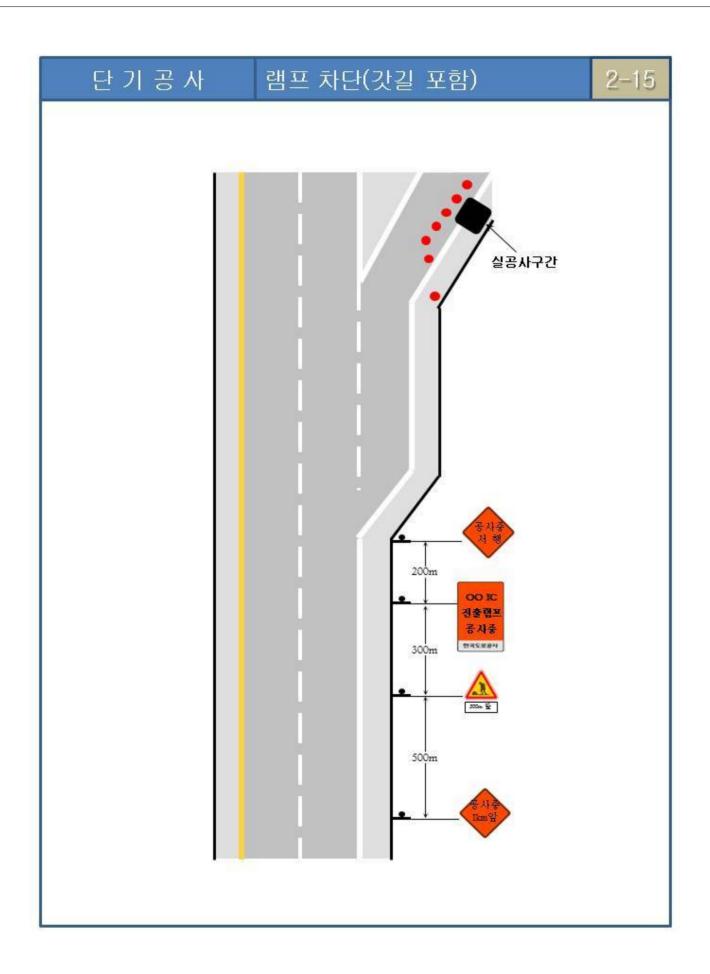
- 중앙분리대에 설치되는 표지는 현장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.
- 최후미 작업보호자동차에 지향성 스피커를 설치해야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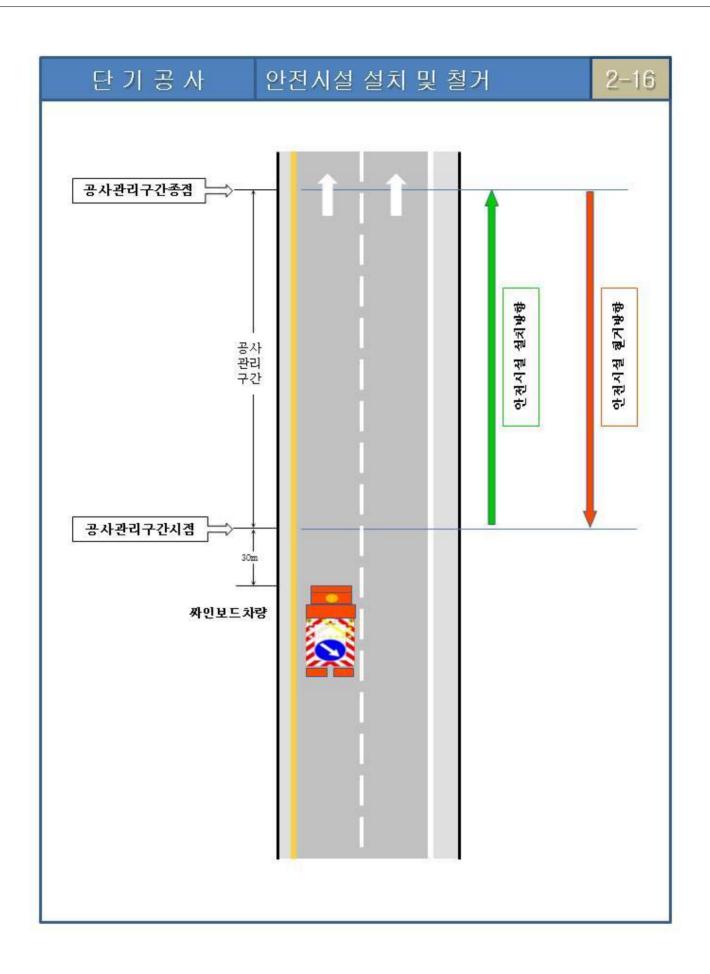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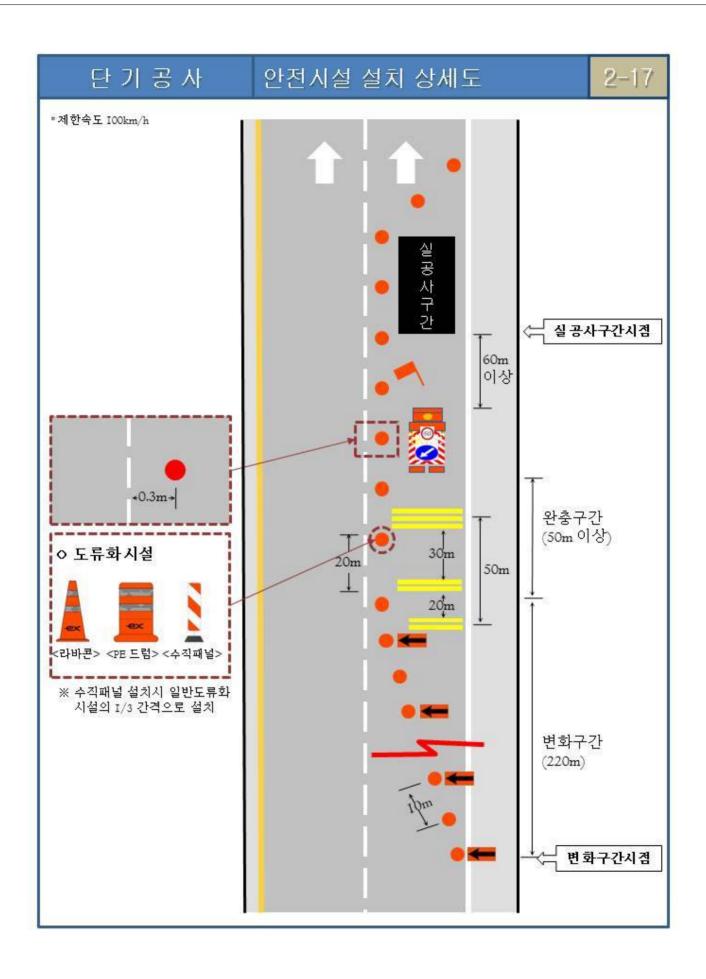
- 중앙분리대에 설치되는 표지는 현장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.
- 최후미 작업보호자동차에 지향성 스피커를 설치해야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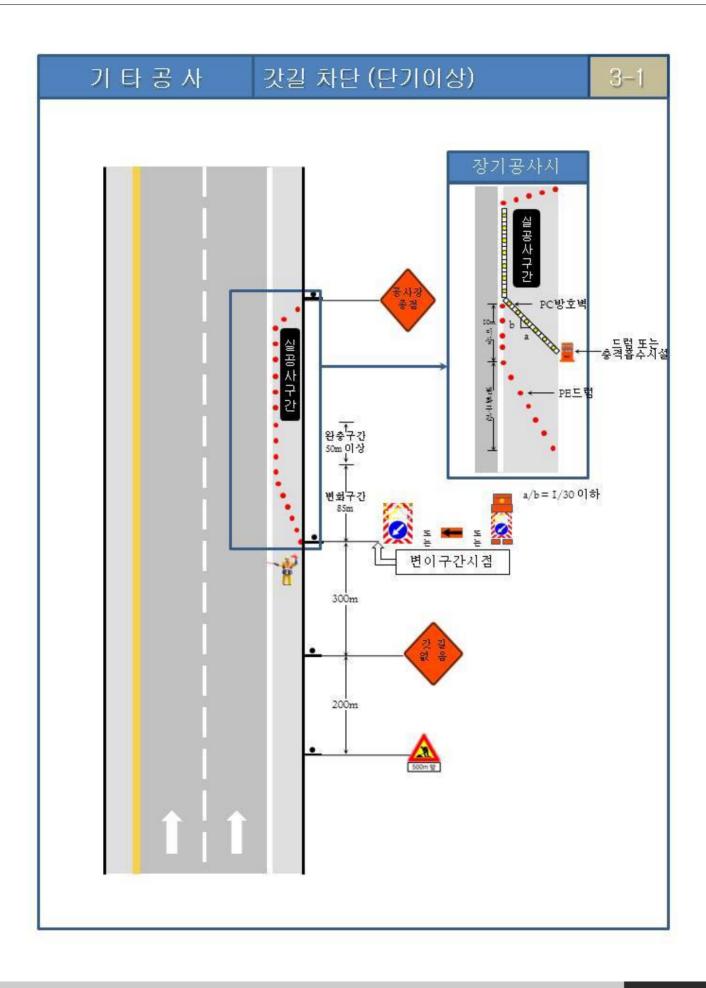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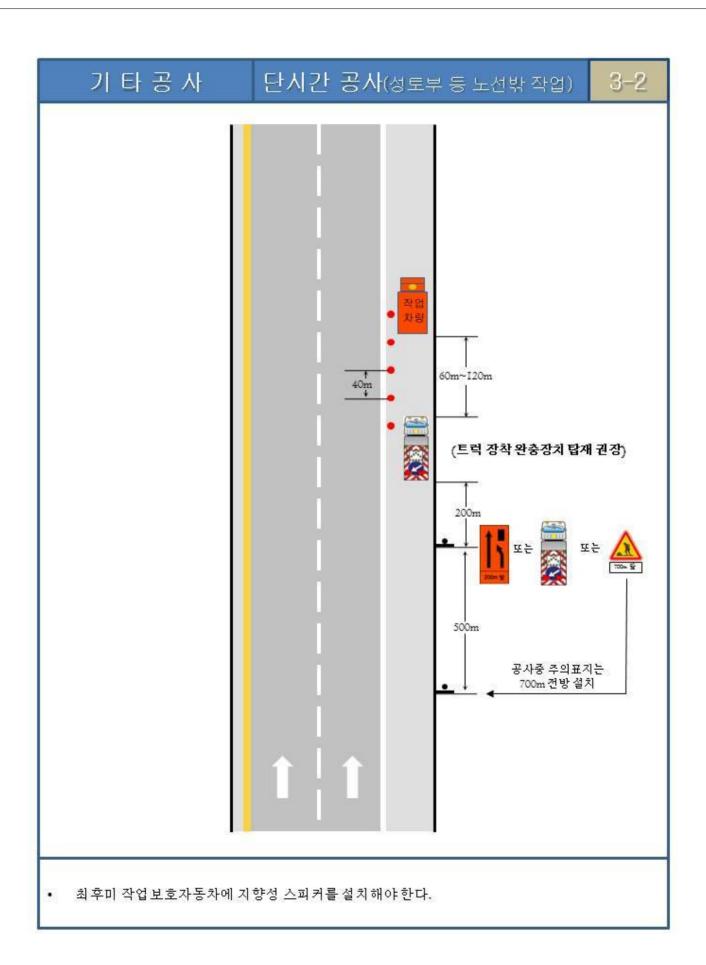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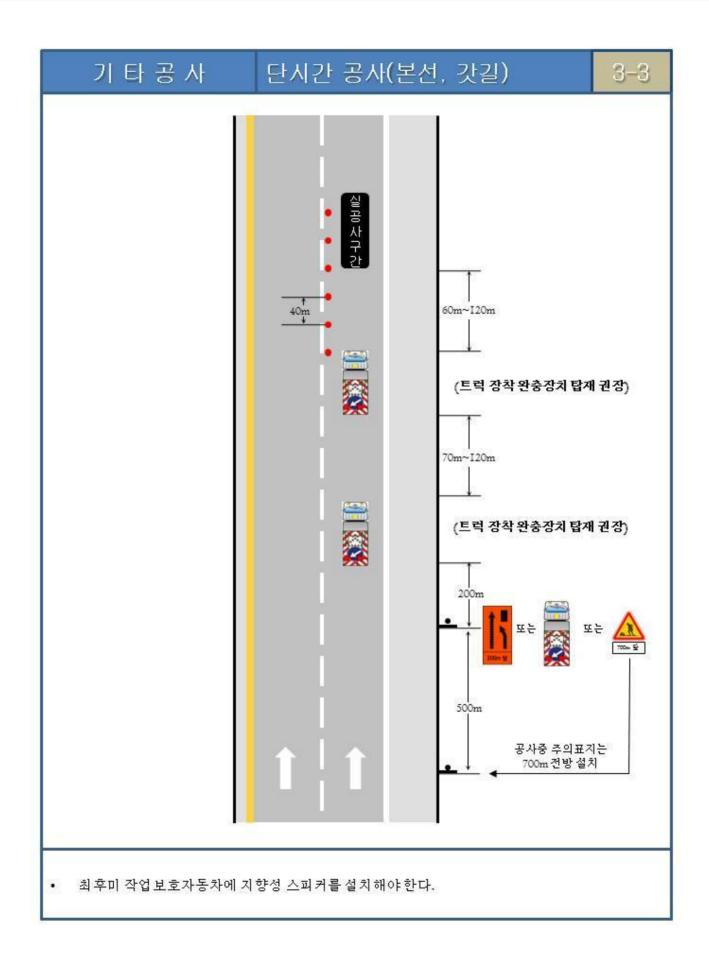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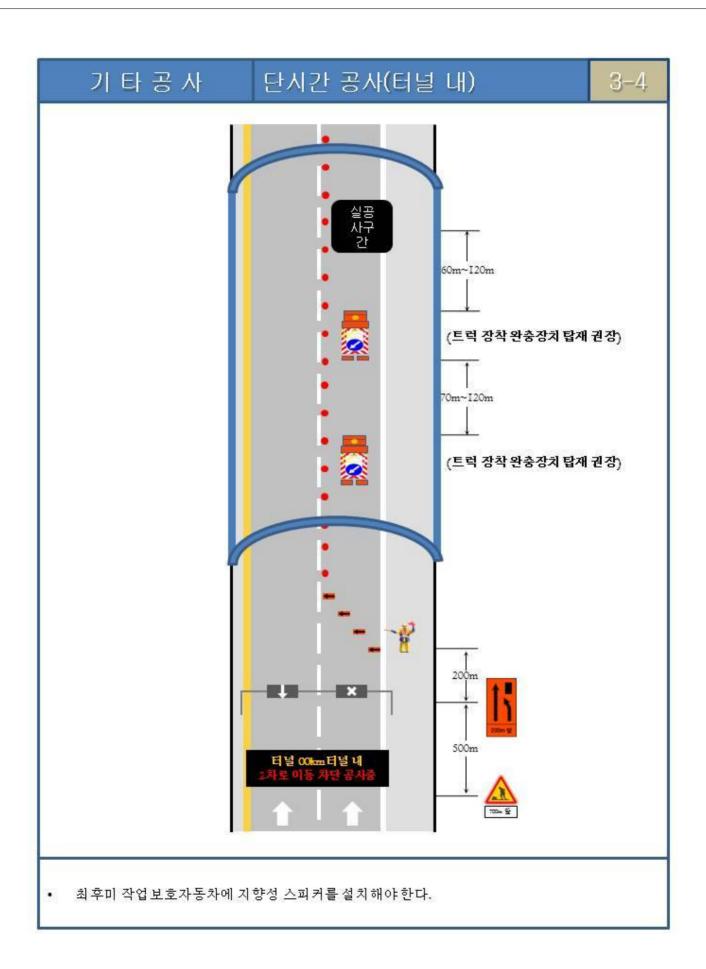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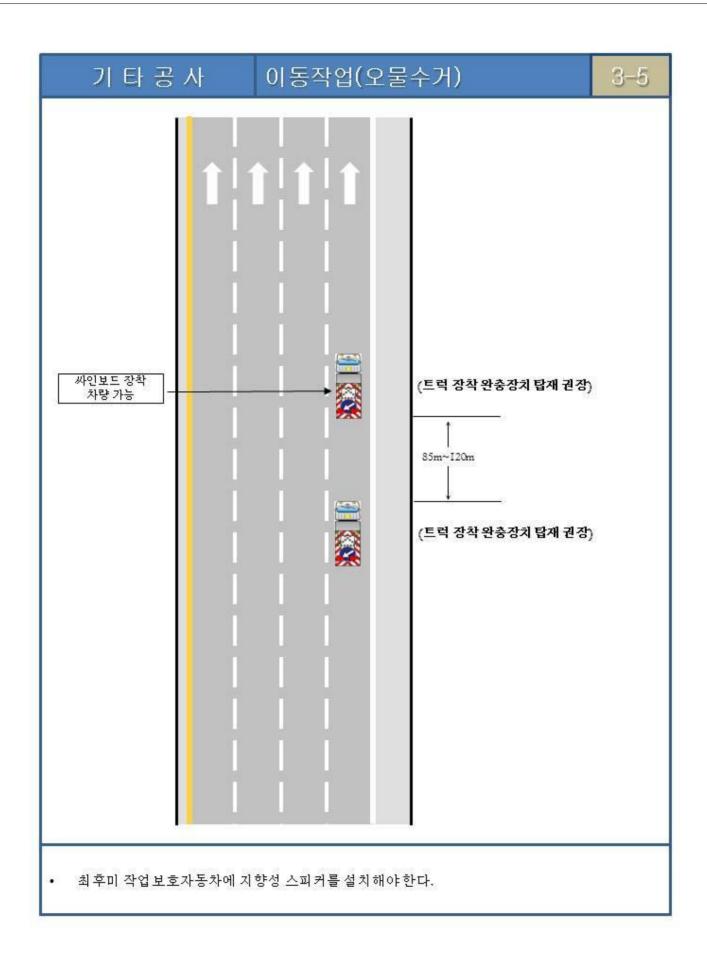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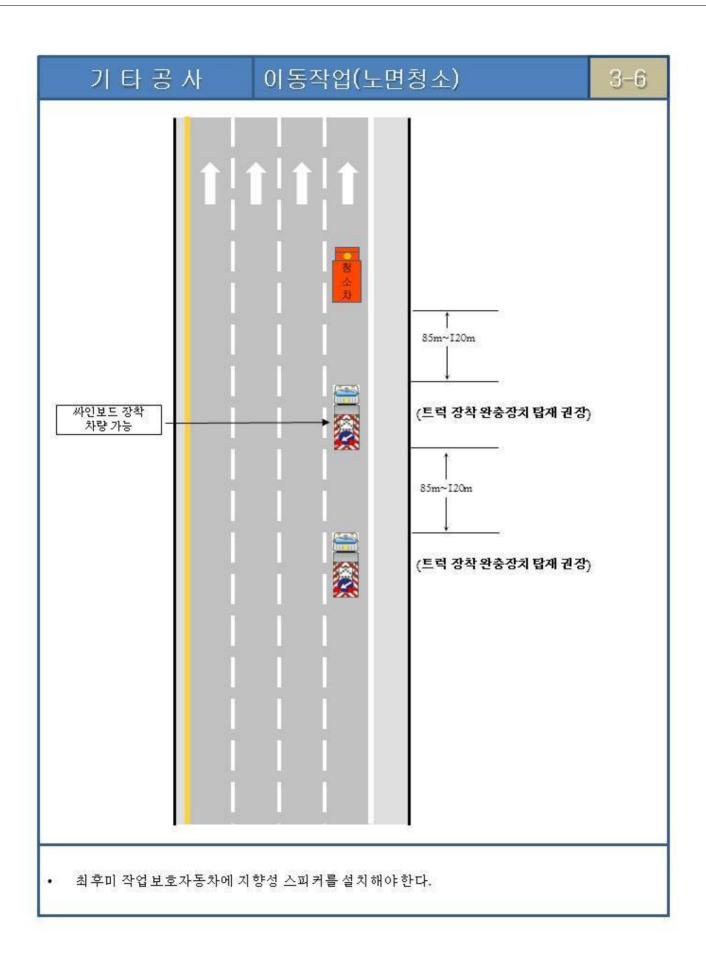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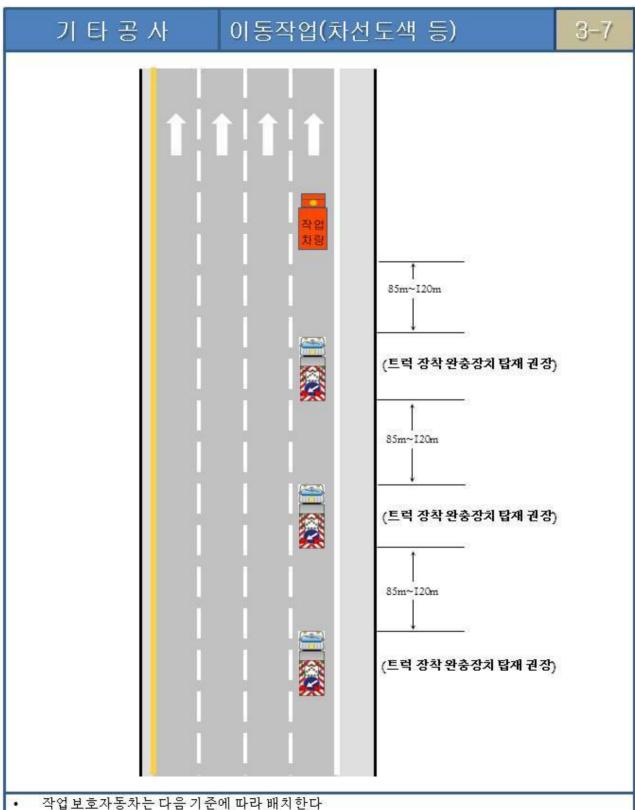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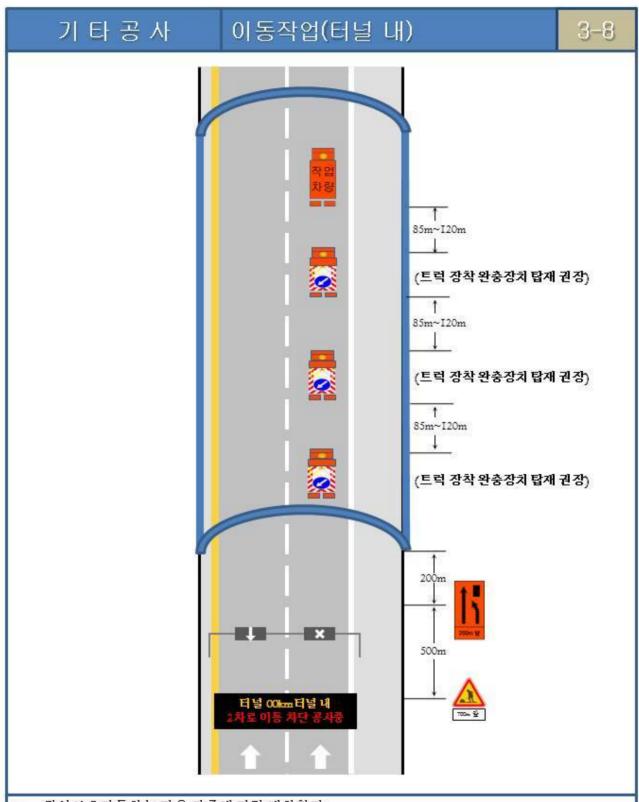








- - 갓길, 일방향 2차로 구간 : 작업보호자동차 2대 배치. (단, 곡선부 등 시거 불량부는 3대 배치)
 - 다차로 구간: 작업보호자동차 3대 배치
- 최후미 작업보호자동차에 지향성 스피커를 설치해야 한다.



- 작업보호자동차는 다음 기준에 따라 배치한다
 - 갓길, 일방향 2차로 구간 : 작업보호자동차 2대 배치.(단, 곡선부 등 시거 불량부는 3대 배치)
 - 다차로 구간:작업보호자동차 3대 배치
- 최후미 작업보호자동차에 지향성 스피커를 설치해야 한다.